

〈일반논문〉

清末 鴨綠江採木公司의 설립을 둘러싼 淸과 日本의 분쟁과 협상*

김택경**

〈목차〉

- I. 머리말
- II. 鴨綠江採木公司 설립의 협상 과정
- III. 차별의 범위에 관한 논쟁
- IV. 관리와 징세에 관한 논쟁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러일전쟁 이후 鴨綠江採木公司의 설립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청과 일본 간의 외교 협상의 결과를 몇 가지 쟁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압록강채목공사에 관해서는 초창기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등에서 사료가 대량으로 공개되고 자료의 접근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덕분에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학계의 선행연구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삼림자원 침탈을 강조하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외교 교섭과 회사 경영, 생산 구조, 시장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압록강채목 공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본고는 압록강채목공사가 설립되는 협상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청과 일본의 논쟁을 다음의 두 가지 방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채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다. 둘째, 관리와 징세에 관한 논쟁이다. 이중 채벌 범위에 관한 논쟁은 청과 일본 간 협상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다. 청은 채벌 범위를 압록강 본류로 제한하고 강과 인접한 특정 지역으로 국한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일본은 채벌 범위를 압록강 본류는 물론 渾江 등 지류를 모두 포함시킨 右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협상의 과정에서 청은 압록강채목공사를 안팎으로 관리하고 징세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주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최초에 구상하였던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청으로부터 渾江 유역의 채벌 과정에 개입하고 동지역의 목재를 수매하는 이권을 추가로 인정받는 등 渾江 유역과 관련된 利權도 쟁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러일전쟁 이래 일본이 軍用木材廠 등의 설치를 통해 압록강 유역 목재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지역에서는 목재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청조는 국내외로부터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고 목재 상인과 압록강 변경 주민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은 압록강채목공사가 압록강 삼림자원을 독점하지 못하게 방어함으로써 이권의 유출을 제한하였으며, 압록강채목공사를 안팎으로 통제함으로써 주권의 침해를 막고자 하였다.

□ 주제어

淸, 日本, 鴨綠江採木公司, 분쟁, 협상, 채벌, 이권, 주권

I. 머리말

清代 鴨綠江 유역의 森林은 淸朝의 封禁政策과 朝·淸의 국경지대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힘입어 오랜 기간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¹⁾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淸은 물론 러시아와 日本 등 열강은 양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이 지역의 목재를 철도, 광산 등과 더불어 주요한 이권으로 인식하였다.²⁾ 청조는 1878년 大東溝에 木稅局을 설치하여 지방 세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았으며, 1902년부터는 관과 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세운 東邊道木植公司를 운영하였다.³⁾ 러시아는 1903년 러시아 목재회사(The Russian Timber Company)의 설립을 계획하고 대한제국의 龍巖浦에 제재공장을 세우는 등 삼림 차별을 개시하였다.⁴⁾ 이에 일본은 1903년 한양에 중국과 義盛木植公司를 설

-
- 1) 청대 압록강 유역의 자연환경과 삼림자원에 관해서는 김선민, 「19세기 압록강 유역의 환경과 개발」, 『사총』 91, 2017; 山本進, 『大清帝國と朝鮮經濟: 開發·貨幣·信用』,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 등 참조. 압록강 유역을 포함한 만주지역 전체 삼림의 분포에 관해서는 蘇雲山·岩井吉彌, 「中國東北地方(滿州)における森林開發構造に關する研究(I) -二類型森林開發構造の形成-」, 『日本林學會關西支部論文集』 3, 1994, 15쪽 참조.
 - 2) 삼림이권은 단순히 벌목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임야와 토지의 점유, 경비병력의 주둔, 철도와 도로, 전신의 부설 등 정치적·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재훈,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의 압록강 삼림채벌권 활용을 통해 본 한·러 경제관계의 성격」, 『역사와 담론』 56, 2010, 543쪽.
 - 3) 饒野, 「20世紀上半葉日本對鴨綠江右岸我國森林資源的掠奪」,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3, 91쪽.
 - 4) 김원수, 「압록강 위기(Yalu Crisis)와 러일전쟁 -전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서양사학연구』 23, 2010, 118쪽; 최덕규, 「대한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1896-1906): 러시아의 압록강 삼림채벌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1, 46~48쪽.

립하여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하였다.⁵⁾ 이로써 압록강에서는 청과 러시아, 일본 삼국이 삼림의 개발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삼국의 경쟁구도는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남만주 지역의 이권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으면서 곧 청과 일본의 양자구도로 전환되었다. 鴨綠江採木公司는 바로 청과 일본이 1908년 압록강 삼림 개발을 위해 설립하였던 목재회사였다. 1940년 해체될 때까지 이 회사는 압록강 삼림 개발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으며, 滿鐵, 撫順 탄광과 더불어 일본의 만주 진출을 대표하는 주요 회사였다.

이러한 압록강채목공사에 관해 초창기 연구는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⁶⁾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등에서 사료가 대량으로 공개되고 자료의 접근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덕분에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
- 5) 王長富 編, 『東北近代林業經濟史』, 北京: 中國林業出版社, 1991, 80쪽; 池翔, 「重塑邊疆: 鴨綠江右岸의林木採伐, 森林交涉與邊疆秩序」, 『重慶大學學報』, 2020-5, 269~271쪽; 李雪瑞, 「鴨綠江採木公司研究(1908-1931)」,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8~10쪽.
- 6) 萩野敏雄, 『朝鮮·滿洲·臺灣林業發達史』, 東京: 林野弘濟會, 1965; 塚瀨進, 「日中合弁鴨綠江採木公司の分析-中國東北地域における日本資本による林業支配の特質-」, 『アジア經濟』第31卷 第10号, 1990; 蘇雲山·岩井吉彌, 「鴨綠江流域における森林開發構造の特質」, 『京都大學農學部演習林報告』64, 1992; 菅野直樹, 「鴨綠江採木公司と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關係の變遷」, 『國史學』172, 2000; 菅野直樹, 「鴨綠江沿岸森林利權問題と日本陸軍」, 『軍事史學』第40卷 第2·3合併号, 2004; 菅野直樹, 「朝鮮·滿州方面からみた寺內正毅像の一斷面: 鴨綠江採木公司等との關係を通じて」, 『東アジア近代史』16, 2013 등 참조.
- 7) 饒野, 「20世紀上半葉日本對鴨綠江右岸我國森林資源的掠奪」; 姜麗, 「鴨綠江流域森林資源與安東縣木材中心市場的形成(1876-1928)」,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黃飛, 「日本對鴨綠江流域森林資源的掠奪與破壞」, 『蘭台世界』, 2008-21; 陳潔, 「清末中日木植交涉研究」, 湖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7; 池翔, 「重塑邊疆: 鴨綠江右岸의林木採伐, 森林交涉與邊疆秩序」; 李雪

중국 학계의 선행연구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삼림자원 침탈을 강조하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외교 교섭과 회사 경영, 생산 구조, 시장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압록강채목공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대만학자 呂愼華는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外交檔案 자료와 『日本外交文書』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고의 주요한 관심사인 淸과 일본의 외교 협상 과정을 ‘利’와 ‘權’의 시각에서 상세하게 규명하였다.⁸⁾

呂愼華의 선행연구는 복잡다단한 淸일의 외교 협상 과정을 처음으로 정리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세부적인 실증에 치중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또 ‘이’와 ‘권’ 두 가지 개념으로 협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취한 방법은 본 연구에 큰 시사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와 ‘권’으로 전체 외교 협상의 과정을 종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론에서 분석한 ‘이’와 ‘권’이 뒤섞이는 경향 역시 淸이 ‘권’을, 일본이 ‘이’를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다시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⁹⁾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고는 러일전쟁 이후 鴨綠江採木公司의 설립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淸과 일본 간 외교 협상의 결과를 몇 가지 쟁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을 둘러싼 외교 협상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채벌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관리와 징세’를 둘러싼 논쟁을 차례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본고가 국

瑞, 「鴨綠江採木公司研究(1908-1931)」,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22; 葉磊, 「鴨綠江採木公司與日本對東北林業生產的殖民介入(1908-1931)」, 『近代史研究』, 2022-3 등 참조. 한편 대만 학계의 연구로는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近現代中國國際合作面面觀』, 臺北: 政大出版社, 2019 등 참조.

8)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37~181쪽.

9)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79쪽.

내의 압록강채목공사에 관한 연구와 청말민초 만주지역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鴨綠江採木公司 설립의 협상 과정

러일전쟁 중 일본은 압록강 유역 목재의 생산과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일본군은 필요에 따라 목재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억류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의 목재 상인과 木把는 사업과 생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졌고 때때로 무력을 동원한 유혈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¹⁰⁾ 이에 청조는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줄이고 변경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에 골몰하였다.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은 일본과 삼림이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변경의 통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책으로 여겨졌다. 청조의 이러한 인식은 러일전쟁 이후 권익을 최대한 신장하고자 분주하였던 일본의 구상과 합치되었고, 그 결과 양국은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¹¹⁾

러일전쟁의 종료 후 1905년 청은 일본과 〈中日會議東三省事宜〉 조약을 체결하였다.¹²⁾ 이 조약의 〈附約〉 第10款에서 청은 일본과 압록강 右岸에 위치한 삼림을 채벌하는 회사(中日木植公司)의 설립에 합의하였다.¹³⁾ 다만 여기에서 청과 일본은 회사의 利權을 양국에 균등하게 분배한

10) 陳潔, 「清末中日木植交涉研究」, 8~45쪽.

11)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40~147쪽.

12) 〈中日會議東三省事宜〉 조약은 일본이 南滿洲 지역을 자국의 세력범위로 확정짓고 향후 권익을 창출하는 데에 근거가 되었다.

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였을 뿐 채벌 지역의 범위와 연한, 회사 설립, 合辦章程의 제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후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¹⁴⁾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은 일본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 1906년 駐中日本公使 林權助는 鴨綠江木植公司 合辦 계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청의 外務部에 전달하였다. 이에 외무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초안을 奉天將軍 趙爾巽과 北洋大臣 袁世凱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일본 측에는 天津에서 북양대신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¹⁵⁾

그리하여 林權助는 천진에서 원세개를 만나 〈合辦公司大綱十一條〉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일본이 제기한 협상의 주요 골자는 채벌의 연한과 범위에 관계된 내용이었다. 林權助는 원세개에게 채벌의 연한을 늘이고 벌목 지역도 渾江 일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林權助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벌목의 범위는 압록강 우안의 일정한 지역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¹⁶⁾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천진에서의 협상은 서로의 구상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¹⁷⁾

천진에서의 회담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林權助는 다시금 외무부에 일본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일본은 채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청이 계속 원안을 고집할 경우 軍用木

13) '右岸'은 청국 방향의 압록강 연안 지역을 의미한다.

14)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2冊,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57, 341쪽.

15)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長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3816쪽;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521쪽.

16)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17)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材廠을 존속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우선 청이 渾江 일대를 별목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을 의식하여 〈中日會議東三省事宜〉의 〈附約〉 第10款에 명시된 “右岸”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그에 의하면 압록강을 경계로 左岸은 韓國이고 右岸은 中國이니 별목의 범위에 마땅히 “우안” 전체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였다. 또 그는 별목의 범위를 협소하게 구획할 경우 장래 동종업계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비판하였다.¹⁸⁾

이러한 林權助의 요구에 외무부는 원세개와 다시 상의를 거쳐 대응하였다. 외무부는 일본 측이 〈中日會議東三省事宜〉의 〈附約〉 第10款에 적시된 “右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岸”은 강에 연한 지방을 가리키며 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의하였다. 또 〈附約〉 第10款에는 “鴨綠江以右”라고 쓰이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면서 일본 측의 말대로 우안 전체가 별목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附約〉 第10款에는 어떤 연유로 “鴨綠江以右”로 쓰이지 않았는지 반문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본 측의 요구가 맞다면 “右岸”이 아니라 “以右”라고 적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아가 외무부는 “우안” 다음에 “地段”의 “廣狹”을 따로 정한다는 대목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별목 범위가 우안 전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외무부는 일본 측에 군대가 이미 철수한 만큼 조속히 군용목재창을 철폐하라고 요청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청은 일본공사 林權助와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채벌 범위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협상은 잠시 담보 상태에 직면하였다. 요사이 阿部守太郎이 林權助를 代理하였고, 이로써 양측의 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8)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19)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청 측은 阿部守太郎이 기본적으로 林權助의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²⁰⁾

阿部守太郎은 林權助가 제기한 합의서 초안을 일부 고쳐 외무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는 청이 혼강 유역을 벌목 범위에 포함시키고 海關의 輸出入稅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면제해준다면 일본은 벌목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청에 報效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원세개와 다시 상의하여 阿部守太郎의 제의에 반박하였다. 외무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혼강은 압록강의 지류가 아니다. 혼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압록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다만 혼강 입구에서 합류하여 함께 바다로 흘러갈 뿐이다. 따라서 혼강 입구 이상의 유역을 채벌 지역으로 획정할 수 없다. 둘째, 채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 최대한 양보하여 江心으로부터 50리 떨어진 지역까지 벌목이 가능하도록 채벌 범위를 조정하였다. 셋째, 회사는 중국 경내에 있으므로 중국의 주권 하에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세금은 중국의 법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²¹⁾

외무부는 阿部守太郎과 협상을 거듭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그을 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阿部守太郎은 외무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臨江縣 帽兒山 이상의 압록강 유역과 혼강 유역(通化 지역)을 채벌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기존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외무부는 일본 측에 양보하여 채벌 범위를 임강현 모아산에서 24道溝까지 확대하였는데, 이 이상 양보하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채벌 연한도 마찬가지로 25년으로 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20)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21)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1쪽.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청 정부에 납부하는 報效 역시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하지만 5%로 낮추었다고 역설하였다. 또 회사가 청의 경내에 있는 만큼 청 정부가 監督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理事長 인사문제의 경우 청과 일본의 合辦 회사라는 취지에 맞게 각국이 한 명씩 임명할 수 있다고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에도 외무부와 阿部守太郎는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양측은 별다른 성과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에 급급하였다.²²⁾

이렇듯 기본 현안에서 양국이 입장의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이 사이 林權助가 다시 복귀하였으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일본 측이 중국 측에서 끝까지 고수하였던 벌목 범위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비로소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양측은 모아산에서 24도구까지 압록강 본류에서 중국 방향으로 60리 이내의 지역을 채벌 범위로 획정하였다.²³⁾ 이로써 압록강의 나머지 유역과 혼강 유역의 삼림은 이전처럼 木把가 벌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청은 목과가 압록강채목공사에게 경비를 빌려 벌목하게 하였고 江浙鐵路公司가 구하는 침목과 강변 주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목과에게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압록강채목공사가 수매하도록 일본에 양보하였다.²⁴⁾ 결국 2년이 넘는 기나긴 줄다리기를 끝에 청과 일본은 1908년 5월 14일 北京에서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9월 11일에는 奉天에서 이를 구체화시킨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에 조인함으로써 압록강채목공사는 마침내 성립되었다.²⁵⁾ 아래에서는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을 둘러싸고 청과

22)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1~522쪽.

23)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卷3·交涉·森林交涉編, 522쪽.

24)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8, 3817쪽.

일본 간 분쟁과 협상의 결과를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과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⁶⁾

III. 채벌의 범위에 관한 논쟁

본래 러일전쟁 이전 압록강 유역의 삼림이권은 러시아에 귀속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을 바도 거의 없었다. 다만 전쟁 중 일본군이 압록강 유역에서 목재를 징발하였고 전쟁 후에도 계속 목재를 통제하면서 청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뿐이었다. 청조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삼림이권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탐탁하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변경 지역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은 1905년 일본과 〈中日會議東三省事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의 〈附約〉 第10款에서 압록강右岸 청국 측에 위치한 삼림을 채벌하는 회사(中日木植公司)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청과 일본은 ‘中日木植公司’를 설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을 뿐, 채벌 지역의 범위와 연한 등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이후 협상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기로 미루었음은 앞서서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채벌 범위는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1條에 적시되었

25) 『紀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1~522쪽.

26) 마지막에 서명한 業務章程은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로 『東三省政略』에 전문이 실려 있다.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4~525쪽; 呂慎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78쪽.

다.²⁷⁾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압록강 우안의 모아산에서 24도구에 이르는 지역으로 압록강 본류에서 청국 방향으로 60리 이내에 속하는 지역을 차별 범위로 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별의 범위는 결국 청이 고수한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일본은 혼강 유역의 통화 지역까지 차별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은 왜 혼강 유역을 포함시키자는 일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의 입장에서 일본은 압록강 유역에 별다른 기득권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본에 큰 이권을 내어줄 필요는 없었다. 일본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청 측에 큰 이권을 요구할 명분이 여러 모로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둘째, 혼강 유역을 차별 범위에 포함시키는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압록강 유역 전체 삼림에 관한 차별권을 요구함에 다름이 아니었다. 압록강 유역의 삼림 지대를 살펴보면 상류로부터 혼강 유역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따라서 혼강 유역까지 차별을 허용하면 압록강 유역 전체 삼림이권을 송두리째 일본과 공유하게 되므로 청조로서는 역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모아산에서 24도구에 이르는 지역은 인적이 드문 산지로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³⁰⁾ 청으로서서는 주민의 생계를 고

27)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3820쪽. 업무장정에서 관련 내용은 第18條이다.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28)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군용목재장을 협상의 카드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용목재장은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12條에 명시되어 있듯이 압록강채목공사가 영업을 개시하면 곧 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3821쪽.

29) 蘇雲山·岩井吉彌, 「中國東北地方(滿州)における森林開發構造に関する研究 (I)-二類型森林開發構造の形成-」, 15쪽.

30) 김택경, 「清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 輯安·臨江·長白 地

려해야 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을 뿐더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통화 지역은 주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이 별목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¹⁾ 넷째, 훈강 유역은 강철철로공사가 이미 별목을 행하고 있었다.³²⁾ 또 목재의 재질도 압록강 유역의 목재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³⁾ 따라서 청조로서는 기존의 핵심 이권을 양보하면서까지 일본과 균점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채벌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청은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에게 실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면 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은 채벌 범위를 상징적으로 청에 양보한 대가로 실질적인 이권을 얻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5條에는 압록강 유역 목파의 별목 범위와 활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압록강채목공사의 채벌 범위 이외의 나머지 지역과 훈강 유역의 삼림을 이전처럼 木把가 별목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料棧 등 牙行의 영업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청 측이 중요한 이권을 지켜낸 것처럼 보인다.³⁴⁾ 하지만 청은 목파가 압록강채목공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별목하도록 하여 사실상 압록강채목공사 자본의 진출과 지배를 허용하였다.³⁵⁾ 또 江浙鐵路公司의 枕木과 주민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를 제

域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55, 2013; 김택경, 「清末 臨江縣의 歸化政策과 韓人 義兵 -臨江任內公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2, 2022 참조.

31)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16쪽.

32) 呂慎華, 「利與權의 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61쪽.

33)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16쪽.

34)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35) 자본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벌권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한 나머지는 모두 압록강채목공사가 收買하는 이권을 일본에 양보하였다.³⁶⁾ 이처럼 압록강 유역 목재의 생산과 유통 구조가 전환된 결과 이후 압록강채목공사의 업무는 ‘直營 및 請負 사업’과 ‘貸金 채벌 사업’, ‘목재 收買’, ‘목재의 販賣와 저장’으로 대별되었고,³⁷⁾ 중국의 목과 사회에서는 ‘貸金把頭’와 ‘直營把頭’라는 방식으로 압록강채목공사와 합작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³⁸⁾

이외에도 압록강채목공사는 청과 대한제국 간 누차 문제가 되어왔던 漂流木을 整理하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 사항은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의 第17條로 추가되었다.³⁹⁾ 이후 압록강채목공사는 〈鴨綠江採木公司漂流木整理規則之議定書〉를 제정하여 양국 간 표류목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단기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⁴⁰⁾ 이와 아울러 청은 일본에 압록강채목공사의 성립 이후 木會를 해산시키기로 합의하였다.⁴¹⁾

청조는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 일본의 이권을 최대한 제한하고 청의 주권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임하였다. 반면 일본

36)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3821쪽. 업무장정에서 관련 내용은 第15條, 第16條, 第21條이다.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37) 鴨綠江採木公司 編, 『鴨綠江森林及林業』, 安東: 鴨綠江採木公司, 1915, 119~160쪽.

38) 池翔, 「重塑邊疆: 鴨綠江右岸的林木採伐, 森林交涉與邊疆秩序」, 272쪽; 葉磊, 「鴨綠江採木公司與日本對東北林業生產的殖民介入(1908-1931)」, 104~109쪽.

39)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40) 「鴨綠江採木公司漂流木整理規則之議定書」, 『東三省交涉輯要·近代中國史料叢刊』 第17輯, 臺北: 文海出版社, 1968, 447~452쪽.

41)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은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서로 상충되는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채별 범위는 바로 이권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는 청조와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충돌하였던 협상의 최대 현안이었다.⁴²⁾ 이상 협상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과 일본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다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채별 범위를 결정하였다.⁴³⁾

IV. 관리와 징세에 관한 논쟁

압록강채목공사는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3條에서 볼 수 있듯이 청일 양국이 각각 15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니만큼 과연 어느 측이 경영권을 행사하는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⁴⁴⁾ 일단 청일 양국은 형식과 실재를 떠나 청 측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다만 청이 관리를 파견하여 회사의 경영권

42)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17쪽.

43)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66~168쪽. 채별 범위와 함께 협상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업 年限의 경우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7條에 적시된 바와 같이 25년으로 합의되었다.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21쪽. 또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1條와 같이 양국은 영업 개시 1년 후 경영구조를 商辦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20쪽.

44)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21쪽.

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자 하였다면, 일본은 청 정부가 파견한 대표가 형식적인 지위만을 누리고 실제적인 권한은 청과 일본이 동일하게 균점하는 경영 구조를 구상하였다. 물론 일본이 이러한 경영 구조를 원하였던 데에는 막상 회사의 업무가 개시되면 실질적인 경영권은 일본 측이 행사하게 되리라는 예측과 복심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였다.⁴⁵⁾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에서 회사의 경영과 인사 구조는 第8條에 규정되어 있다.⁴⁶⁾ 이 규정에 의하면 奉天의 督撫가 東邊道를 파견하여 督辦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독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독판 아래에는 理事長을 두었고 청과 일본에 각각 1명씩 배분하였다. 이사장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판은 회사에서 최고 지위에 해당하였으나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감독’하는 데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이사장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최고위층이었다. 이는 이사장 이하 理事와 技師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모두 이사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⁷⁾

이상에서는 압록강채목공사 내부의 경영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압록강채목공사와 청 정부의 관계에 관해 분석해보겠다. 청조는 압록강채목공사가 중국에 설립되어 있는 만큼 청(봉천성) 정부의 관할 아래에서 중국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⁴⁸⁾ 압록강채목공

45)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56~159, 163~165쪽.

46)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3821쪽. 업무장정에서 관련 내용은 第5條, 第6條, 第7條이다.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4쪽.

47)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4쪽.

48) 협상의 결과(〈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의 第4條) 압록강채목공사의 본부(總局)는 安東에 설치되었다.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

사가 청 정부의 자장에서 예외가 되고 중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중국의 주권은 그만큼 손상될 우려가 되기 때문이었다.⁴⁹⁾ 이에 청조는 압록강채목공사의 森林警察 업무를 중국 경찰의 관할 아래로 귀속시켰다.⁵⁰⁾ 경찰의 관할권 문제는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를 제정하면서 副章의 제5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⁵¹⁾

다음으로 징세와 관련된 청일의 논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압록강채목공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은 팽팽하게 맞섰다. 협상 초기 일본은 청에 해관의 수출입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은 중국의 법에 따라 압록강채목공사도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⁵²⁾ 양측은 대립을 거듭한 끝에 결국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 第12條에서 압록강채목공사가 木料稅를 납부하고 수입 기계와 벌목기구의 경우 면세한다는 내용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⁵³⁾ 다만 구체적인 세목과 세율에 관해서는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을 논의하면서 결정하기로 미루었다. 이후 합의된 〈中日採木公司事務章程〉 第14條에 의하면 木料稅는 기존 山價와 客稅 稅則에 따르되 20%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船捐은 기존 장정대로 처리하였고 압록강채목공

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21쪽.

49)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17쪽.

50) 「森林交涉編,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520쪽.

51)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52) 呂慎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57쪽.

53)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淸季外交史料』 8, 3821쪽.

사와 관련시키지 않았다. 목재에 대한 驗費, 捕盜捐 등 각종 捐費는 면제하였다. 선박에 실어 운반하는 목재의 경우 海關에서 장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船捐을 대신하게 하였다. 土地의 경우 기존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⁵⁴⁾

報效는 협상의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유발한 사항이었다. 청은 협상 초기 경내 다른 합판 회사와의 관례에 따라 일본에 보호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보호의 납부를 아예 거부하기조차 하였다. 이후 협상이 거듭되면서 일본은 비로소 보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지만, 이윤의 20%를 납부하라는 요구와 같이 고율에 해당할 경우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⁵⁵⁾ 이후 청과 일본 간 협상의 초점은 비율의 고저로 맞춰졌다.⁵⁶⁾ 결국 양측은 보호의 명목으로 순이익의 5%를 청조에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⁷⁾

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의 협상 과정과 청일의 논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는 청과 일본의 주요 논쟁점을 다음의 두 가지 방면에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첫째, 채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다. 둘째, 관리와 징세에 관한 논쟁

54)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辦事正章二十一條副章六條」,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525쪽.

55)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59쪽.

56) 呂愼華, 「利與權的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164쪽.

57) 〈中日合辦鴨綠江採木公司章程〉에서 보호에 관한 규정은 第10條에 있다. 「外部奏中日合辦鴨綠江右岸木植訂定採木公司章程摺」, 『清季外交史料』 8, 3821쪽.

이다. 이중 채벌 범위에 관한 논쟁은 청과 일본 간 협상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다. 청은 채벌 범위를 압록강 본류로 제한하고 강과 인접한 특정 지역으로 국한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일본은 채벌 범위를 압록강 본류는 물론 渾江 등 지류를 모두 포함시킨 右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협상의 과정에서 청은 압록강채목공사를 안팎으로 관리하고 징세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주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최초에 구상하였던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청으로부터 渾江 유역의 채벌 과정에 개입하고 동지역의 목재를 수매하는 이권을 추가로 인정받는 등 渾江 유역과 관련된 利權도 챙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러일전쟁 이래 일본이 軍用木材廠 등의 설치를 통해 압록강 유역 목재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지역에서는 목재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청조는 국내외로부터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고 목재 상인과 압록강 변경 거주민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압록강채목공사 설립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은 압록강채목공사가 압록강 삼림자원을 독점하지 못하게 방어함으로써 이권의 유출을 제한하였으며, 압록강채목공사를 안팎으로 통제함으로써 주권의 침해를 막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압록강채목공사에 관해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외의 선행연구도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 국내 학계에서 압록강채목공사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진척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외의 우수한 연구를 소개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2023.03.30. 투고 / 2023.04.14. 심사완료 / 2023.04.20. 게재확정)

[Abstract]

**Disputes and Negotiations between Qing Dynasty and
Japan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Yalu Timber Company
in the Late Qing Dynasty**

Kim, Teakkyung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which were developed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Yalu Timber Company(鴨綠江採木公司)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rough several issues. In the early days,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in Japanese academia, but recently, due to the disclosure of large amounts of historical materials and easier access to data at the Asian Historical Data Center, research is actively being conducted in Chinese academia. Prior research in Chinese academia maintains the existing perspective of emphasizing the invasion of forest resources by Japanese imperialism, but sheds light on the Yalu River mining work in various fields such as diplomatic negotiations, company management, production structure, and market form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bate between Qing and Japan, which took place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Yalu Timber Company,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t is a debate over the scope of logging. Second, it is a debate about supervision and taxation. Among them, the debate over the scope of logging was the biggest issue in negotiations between Qing and Japan. The Qing gov-

ernment tried to limit the scope of logging to the main stream of the Yalu River and limit it to a specific area adjacent to the river. On the other hand, Japan tri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llection to the entire area of 右岸, which included all tributaries such as the 渾 River as well as the main stream of the Yalu River.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Qing focused on securing the authority to manage and tax the Yalu Timber Company as much as possible. In response, Japan failed to fulfill the initial demands, but it also took care of the 渾 River basin by intervening in the production of logging in the 渾 River basin and receiving additional recognition of the authority to resell wood in the area.

Since the Russo-Japanese War, Japan has completely controlle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ood in the Yalu River basin through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forces, and various disputes over wood have developed sharply in the region. In response, Qing actively negoti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Yalu Timber Company to resolve disputes raised at home and abroad and to ensure the livelihood of timber merchants and residents along the Yalu River. The Qing government limited the outflow of interest by defending the Yalu River Vegetation Corporation from monopolizing the Yalu River forest resources, and tried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sovereignty by controlling the Yalu Timber Company inside and outside.

□ Keyword

Qing Dynasty, Japan, Yalu Timber Company, disputes, negotiations, logging, interests, sovereignty

[참고문헌]

1. 사료

徐世昌 等 編纂, 『東三省政略』 卷3·交涉·森林交涉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鴨綠江採木公司 編, 『鴨綠江森林及林業』, 安東: 鴨綠江採木公司, 1915.

王彥威·王亮 編輯, 李育民·劉利民, 李傳斌, 伍成泉 點校整理, 『清季外交史料』 8, 長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2冊,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57.

劉瑞霖 編, 『東三省交涉輯要·近代中國史料叢刊』 第17輯, 臺北: 文海出版社, 1968.

2. 연구저서

山本進, 『大清帝國と朝鮮經濟: 開發·貨幣·信用』,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

王長富 編, 『東北近代林業經濟史』, 北京: 中國林業出版社, 1991.

王文隆 等, 『近現代中國國際合作面面觀』, 臺北: 政大出版社, 2019.

萩野敏雄, 『朝鮮·滿洲·臺灣林業發達史』, 東京: 林野弘濟會, 1965.

3. 연구논문

김선민, 「19세기 압록강 유역의 환경과 개발」, 『사총』 91, 2017.

김원수, 「압록강 위기(Yalu Crisis)와 러일전쟁- 전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서양사학연구』 23, 2010.

이재훈,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의 압록강 삼림채벌권 활용을 통해 본 한·러 경제관계의 성격」, 『역사와 담론』 56, 2010.

- 최덕규, 「대한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1896-1906): 러시아의 압록강 삼림
채벌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2001.
- 姜 麗, 「鴨綠江流域森林資源與安東縣木材中心市場的形成(1876-
1928)」,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呂慎華, 「利與權의角力: 中日合辦鴨綠江木植公司研究(1904-1908)」,
『近現代中國國際合作面面觀』, 臺北: 政大出版社, 2019.
- 葉 磊, 「鴨綠江採木公司與日本對東北林業生產的殖民介入(1908-1931)」,
『近代史研究』, 2022-3.
- 饒 野, 「20世紀上半葉日本對鴨綠江右岸我國森林資源的掠奪」, 『中國
邊疆史地研究』, 1997-3.
- 李雪瑞, 「鴨綠江採木公司研究(1908-1931)」,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22.
- 池 翔, 「重塑邊疆: 鴨綠江右岸的林木採伐、森林交涉與邊疆秩序」, 『重
慶大學學報』, 2020-5.
- 陳 潔, 「清末中日木植交涉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黃 飛, 「日本對鴨綠江流域森林資源的掠奪與破壞」, 『蘭台世界』, 2008-
21.
- 菅野直樹, 「鴨綠江採木公司と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
關係の変遷」, 『國史學』 172, 2000.
- 菅野直樹, 「朝鮮·滿州方面からみた寺内正毅像の一断面: 鴨綠江採木
公司等との關係を通じて」, 『東アジア近代史』 16, 2013.
- 菅野直樹, 「鴨綠江沿岸森林利權問題と日本陸軍」, 『軍事史學』 第40卷
第2·3合併号, 2004.
- 蘇雲山·岩井吉彌, 「鴨綠江流域における森林開發構造の特質」, 『京都
大學農學部演習林報告』 64, 1992.

塚瀬進, 「日中合弁鴨綠江採木公司の分析-中國東北地域における日本資本による林業支配の特質-」, 『アジア經濟』第31卷 第10号, 1990.